

대전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11563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1156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소204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변론 종결2020. 10. 19.

판결 선고2020. 11. 20.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소204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의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9. 14. 09: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원촌교 네거리의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이하 '원고 진행 차로'라 함) 중 바깥차로를 중리동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원고 진행 차로 왼쪽에는 유턴하여 그 차로로 합류할 수 있는 2차선 도로(이하 '피고 진행 차로'라 함)가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피고 진행 차로 중 바깥 차로에서 원고 진행 차로로 합류하려고 유턴하다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사고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살짝 내렸으나 전방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의 20%인 118,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피고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 원고 진행 차로의 상황을 미리 살핀 다음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차량에게도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원고 진행 차로의 바깥을 정상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도로교통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일시 멈춘 다음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유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 차량이 일시 멈춤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진행 차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전방 주시 및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사고 전에 미리 알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위 118,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14.(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신영희

판사유석철